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근거 마련 〉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5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제220965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1항 신설)	3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220965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맹성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4. 8.
3. 회 부 일 : 2025.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에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1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양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양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¹⁾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양도자의 사업면허, 사업 관련 행정처분 등 양도자의 지위 일체가 양수자에게 승계됨²⁾.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등의 중범죄 사실이 있거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 및 사업면허가 취소됨³⁾.

1)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한 종류로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라목)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대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그런데, 최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후에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인의 범죄사실이나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양수자 면허취소 피해 사례(2020~2024) 】

(단위 : 건)

면허취소 사유	합계	'20	'21	'22	'23	'24
합계	16	3	4	2	5	2
특정강력 범죄	0	0	0	0	0	0
성폭력 범죄	3	1	1	0	0	1
음주운전	9	2	3	2	1	1
교통사고	2	0	0	0	2	0
여객법 위반	0	0	0	0	0	0
기타	2	0	0	0	2	0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제5항 및 제87조제3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 또는 양수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와 기존 운수종사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이⁴⁾⁵⁾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37호	사업면허취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인가 전에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2024년 12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사항」을 의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고, 관한 관청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5)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마다 경찰청에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시·도에 통보하고 있음.